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185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.

발 의 자: 박성민·강승규·정동만

김위상 · 서일준 · 박덕흠

백종헌 · 강민국 · 최보윤

정희용 · 구자근 의원

(119]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 성조사를 하고,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 해서는 수거·파기 또는 제조·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어린이제 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 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 또는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, 관련 해외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 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,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의2 신설).
- 나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 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의2 신설).
- 다.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·관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 및 제28조).
- 라.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등을 하도록 함(안 제14조의2 신설).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의2. "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"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(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.
- 2의2. "해외통신판매중개자"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)로서 매출액, 이용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조의2(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등)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. 다만, 「환경보건법」에 따 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.
 - 1.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· 신체에 위

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

- 2.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 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
- 3.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. 다만, 「환경보건법」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.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「관세법」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물품(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만 해당한다)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.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관 전의 직접구매 해외어 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 여 반송,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통관 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9조의2에 따른

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삭제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.

- 1.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- 2.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 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.
-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방법·절차,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및 제5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결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"결과"를 "결과 및 제6조의2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어린이제품"을 "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"으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삭제등의 권고 등)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의 해당 직접구매해외어린이제품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(이하 "삭제등"이라 한다)를 권고할 수 있다.

- 1.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
- 2.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제조·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 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.
-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,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 관계를 가진 사업자"를 "사업자,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 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권고"를 "권고, 제9조의2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"로 한다.

제2장제1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국내대리인의 지정 등) ①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(이하 "국내대리인"이라 한다)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제품안전기본법」 제15조의4에 따라 국내

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 지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.

- 1.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
- 2.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 해제의 신청
-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.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1.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 가 설립한 국내 법인
- 2.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 가 임원 구성,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는 국내 법인
-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물에 공개하여야 한다.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1. 국내대리인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)
- 2. 국내대리인의 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),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

-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그 행위를 한 것 으로 본다.
-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"어린이제품"을 "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어린이제품"을 "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"으로 한다.

제43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 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1의2. "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
	품"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
	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(컴
	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
	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
	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
	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
	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제품을
	<u>말한다.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2의2. "해외통신판매중개자"란
	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
	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
	중개자(「전자상거래 등에서
	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
	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
	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)로
	서 매출액, 이용자수 등 대통
	<u>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</u>
	하는 자를 말한다.

3. ~ 1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- 3. ~ 13. (현행과 같음)

 제6조의2(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 품의 안전성조사 등) ①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. 다만, 「환경보건법」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.
 - 1.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·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
 - 2.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
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
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
 - 3.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어린

 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

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관 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어 린이제품이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

청장과 합동으로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. 다만, 「환경보건법」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 여 「관세법」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(직접구 매 해외어린이제품만 해당한 다)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통관 전의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 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, 폐기

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9조의2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삭제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.

- 1.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- 2.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기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.
-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방법·절차,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세부적인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 제

제8조(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있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.

③ (생 략) <신 설>

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령으로 정한다.
제8조(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
한 공표) ①
-결과 및 제6조의2에 따른 직
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
조사 결과
②
어린이제품
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
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의2(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
품의 삭제등의 권고 등) ① 산
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의2
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
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
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 버몰에서의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삭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(이하 "삭제등"이라 한다)를 권고할 수 있다.

- 1.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 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
- 2.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제조·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 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.
-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 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

제11조(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) 저 ①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권 고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받은 <u>사업자 또는 해</u> 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 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권고 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 제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<u>권고</u> 또 는 제10조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

<u>야 한다.</u>
④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
고,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
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
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111조(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)
①
<u>사업자, 해당 수</u>
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
관계를 가진 사업자 또는 제9
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
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-
②
권고, 제9
조의2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

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

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· ④ (생 략) <신 설>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
제14조의2(국내대리인의 지정 등)
①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다음
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
(이하 "국내대리인"이라 한다)
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다만, 「제품안전기본법」 제15
조의4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
정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
인 지정으로 이를 갈음할 수

- 1.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의 이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
- 2.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 해 제의 신청
-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.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 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해외 통신판매중개자는 다음 각 호

-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 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 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1.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

 지정하여야 하는 해외통신판

 매중개자가 설립한 국내 법

 인
- 2.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해외통신판 매중개자가 임원 구성,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
-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 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 버몰에 공개하여야 한다. 국내 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 한 같다.
- 1. 국내대리인의 성명(법인의

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

 의 성명을 말한다)
- 2. 국내대리인의 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

제28조(안전정보의 수집·관리) 제
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제
품안전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
제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어
린이제품과 관련된 각종 사고
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・
관리하여야 한다.

② <u>어린이제품</u> 안전정보의 수 집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제43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말한다), 전화번호 및 전자우
<u>편 주소</u>
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
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
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
지정한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
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
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
해외통신판매중개자와 유효한
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.
제28조(안전정보의 수집・관리)
①
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
<u>어린이제품</u>
<u>.</u>
② 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
<u>외어린이제품</u>
제43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2

1.・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의2.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
	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
	<u>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</u>
	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
	<u>자</u>
3. ~ 11. (생 략)	3. ~ 11. (현행과 같음)
③ • ④ (생 략)	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